

2021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1. 6. 30. 입찰공고분 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		(재+직노) x 율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- 전기·통신- 소방·기타		(노+경+일) x 율	중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과 (재+직노) x 율 x 1.2 중에 작은 금액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3.0	13.0	5.8	5.8	5억 미만	6.0	5.5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
	7~12개월 (365일)	13.1	13.1	5.8	5.8		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9	12.9	6.5	6.5									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2.5	12.5	6.6	6.6													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7	12.7	6.4	6.4	30억 - 50억 미만	30억 - 50억 미만	5.0	12.0	산업·설비공사	0.16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종)	0.32	5억 미만	일반건설공사(갑)	2.93	일반건설공사(을)	3.09	
	7~12개월 (365일)	12.7	12.7	6.4	6.4		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6	12.6	7.1	7.1									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2.1	12.1	7.1	7.1														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6	12.6	6.9	6.9	50억 - 100억 미만	50억 - 100억 미만	5.5	10.0	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	0.16	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	0.10	5억 ~ 50억 미만	일반건설공사(갑)	1.86	일반건설공사(을)	1.99	
	7~12개월 (365일)	12.7	12.7	6.9	6.9		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5	12.5	7.5	7.5									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2.1	12.1	7.6	7.6												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2.7	12.7	7.0	7.0	300억 - 1000억 미만	300억 - 1000억 미만	5.0	4.5	10.0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50억 이상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	일반건설공사(을)	2.10		
	7~12개월 (365일)	12.7	12.7	7.0	7.0		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6	12.6	7.7	7.7									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2.1	12.1	7.8	7.8											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관세비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 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				1000억 이상				4.5	9.0								
[산재보험료]						[환경보전비]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					
(노) x 3.7		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0-145호(2020. 12. 29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				구분				요율		공사규모(추정가격)		요율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			
[고용보험료]				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0.9		50억 미만		0.081		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: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: 재료비(도급자관급 포함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					
				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0.4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0.080							
						지하철		0.5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0.075							
						철도		1.5		300억 이상 중상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0.071							
				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0.5		300억 이상 중상·중평제(건축)		0.068							
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도 방지막 설치		1.8		턴키·대안공사		0.084							
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도 방지막 미설치		0.8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						
						댐		1.1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							
						택지개발		0.6											
						기타 토목(하천 등)		0.8											
주택(재개발, 재건축)		0.7							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(2018.7.26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19-244호, 2018.12.18.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				주택(신축)		0.3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	수수료							
						주택 및 건축		0.5		70억 미만		[직공비]x0.0141%)x공기(년)							
					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	0.3		70억 이상~120억미만		[1백만원+ (직공비-75억)x0.0102%]x공기(년)							
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				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·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	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		120억이상~250억미만		[1.5백만원+ (직공비-130억)x0.0077%]x공기(년)		- [일반건설공사(갑)] 건축건설, 교량건설, 도로신설, 철도·궤도의 보수복구,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					
[건강보험료]					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[연금보험료]		250억이상~500억미만		[2.4백만원+ (직공비-250억)x0.0063%]x공기(년)		- [일반건설공사(을)] 기계장치공사, 석도건설공사					
(직노) x 3.43		(건강보험료) x 11.52		(직노) x 4.5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			500억 이상		[4백만원+ (직공비-500억)x0.0050%]x공기(년)		- [중간건설공사] 고재방(댐)(높이20m이상의 제방, 방파제, 안벽), 수력발전시설, 터널(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) 신설공사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				[퇴직장제부금비]				120억이상~250억미만		[1.5백만원+ (직공비-130억)x0.0077%]x공기(년)		- [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] 철도, 궤도시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역사, 과선교, 송전선로					
(직노) x 2.3						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		250억이상~500억미만		[2.4백만원+ (직공비-250억)x0.0063%]x공기(년)		- [특수 및 기타건설공사(단독발주에 한함)] 준설, 조경(조경관련 전문 포함), 택지조성(경지 정리포함),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(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)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-을 기준으로 함)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			500억 이상		[4백만원+ (직공비-500억)x0.0050%]x공기(년)		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					
						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						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노동부 고시 제2020-63호, 2020.1.23.)					
														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)은 2000.7.31.이전 「(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, 제9조)					
														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					
														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					
														- 추정가격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					